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 7.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1차위원회(2008. 7. 4)
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2008. 7. 7)
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2008. 7. 8)
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4차위원회(2008. 7.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재 형

가. 제안이유

-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출내역

- 2007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검사 의견서
- 결산증빙자료(결산서에 포함)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계	영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10,143,713,392	239,918,298,213	70,225,415,179	70,225,415,179	4,938,075,000	9,059,079,080	1,282,906,555	54,945,354,544
일 반 회 계	283,483,348,217	231,569,030,771	51,914,317,446	51,914,317,446	4,938,075,000	8,945,506,460	1,177,049,615	36,853,686,371
특 별 회 계	26,660,365,175	8,349,267,442	18,311,097,733	18,311,097,733	0	113,572,620	105,856,940	18,091,668,173
의료보호기금	307,891,040	214,625,260	93,265,780	93,265,780	0	0	80,791,240	12,474,540
주 차 장	24,785,918,438	8,134,642,182	16,651,276,256	16,651,276,256	0	113,572,620	25,065,700	16,512,637,936
기반시설부담금	1,566,555,697	0	1,566,555,697	1,566,555,697	0	0	0	1,566,555,697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원)

기 금 별	전년도말현재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마)=(가)+(나)
		계(나)=(다)-(라)	수납액(다)	지출액(라)	
합 계	53,814,609,909	18,852,753,360	41,375,755,460	22,523,002,100	72,667,363,269
통합관리기금	0	22,694,758,533	22,694,758,533	0	22,694,758,533
구청사건립기금	27,558,750,360	△7,142,213,768	11,391,856,232	18,534,070,000	20,416,536,59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47,853,516	△120,460,120	425,099,880	545,560,000	827,393,396
기초생활보장기금	665,380,371	244,179,372	244,179,372	0	909,559,743
노인복지기금	526,483,411	△3,598,986	21,821,014	25,420,000	522,884,425
여성발전기금	508,876,438	300,349,858	313,549,858	13,200,000	809,226,296
중소기업육성기금	572,168,484	843,255,670	2,099,025,670	1,255,770,000	1,415,424,154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27,252,720	141,041,040	230,181,040	89,140,000	268,293,76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203,914,533	97,055,235	189,518,985	92,463,750	1,300,969,76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19,257,447	7,185,860	7,185,860	0	226,443,307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19,204,630,396	1,207,705,780	1,208,195,780	490,000	20,412,336,176
도로굴착복구기금	472,160,136	363,683,229	2,114,587,929	1,750,904,700	835,843,365
재난관리기금	463,838,649	146,397,260	293,473,660	147,076,400	610,235,909
식품진흥기금	1,344,043,448	73,414,397	142,321,647	68,907,250	1,417,457,845

※ 실질적인 당해연도말 현재액(합계액-통합관리기금) = 49,972,604,736원 (72,667,363,269원-22,694,758,533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 승 관)

▣ 세입예산

○ 2007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3,778만 4,547원이 포함된 2,612억 5,970만 8,54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34억 8,334만 8,21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5%로 초과징수 되어 전년도의 103.4%에 비해 징수율이 향상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136억 18만 3,687원에 비하여도 실제 징수율은 약 90.4%로 전년도의 89.9%에 비해 0.5% 증가되었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의 징수결정액은 1,660억 2,628만 1,01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59억 944만 5,547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율은 약 81.9%로 전년도의 82%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바, 징수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지방세의 지난년도수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4억 864만 4,460원 대비 약 46.1%에 해당하는 6억 4,952만 9,760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35.4%보다 실제징수율이 10.7% 증가하였으며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억 3,054만 2000원의 약 122.4%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의 107.9% 보다 14.5% 증가 하였으나 지난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

○ 2007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3,778만 4,547원이 포함된 2,612억 5,970만 8,547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8.6%에 해당하는 2,315억 6,903만 771원이 지출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동행정운영의 시설비 구 아현2동 구민편의시설 건립비 등 당해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8건의 사업비 49억 3,807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서강동 복합청사 신축, 치매지원센터 건립비 등 25건의 사업비 89억 4,550만 6,460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11건에 4억 700만원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되었고, 총무과의 무인안내시스템 도입비 등 32건에 4억 6,530만 3천원이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었으며, 2007년 1월 2일 및 2007년 2월 15일 2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265건에 1,274억 2,552만 6,000원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되었음.

○ 2007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1%에 해당하는 158억 709만 6,316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1억 6,040만 50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8,744만 150원, 예산절감 5,200만원, 예산집행잔액 95억 7,972만 7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1,777만 1,556원, 예비비 27억 976만 3,83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약 7.4%보다는 약 1.3%가 감소되었음.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2007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없이 2억 9,780만 3,000원이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4억 6,273만 3,15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6.5%에 해당하는 3억 789만 1,04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억 5,484만 2,1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2007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2억 9,780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2.1%에 해당하는 2억 1,462만 5,260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27.9% 해당하는 8,317만 7,740원이 되겠으며, 2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12건에 5억 3,599만 9천원이 되겠음.

■ 주차장특별회계

○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68만 3,760원이 포함된 230억 5,643만 760원이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478억 1,524만 5,067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51.8%에 해당하는 247억 8,591만 8,438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230억 2,932만 6,62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의 징수율이 2006회계연도에는 9.2%였으나 2007회계연도에는 8.0%로 징수율이 저조한 바 지난년도 체납금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됨.

○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68만 3,760원이 포함된 230억 5,643만 76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5.3%에 해당하는 81억 3,464만 2,182원이 지출되고,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 구매 설치비등 2건에 1억 1,357만 2,62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 등 2건에 819만 1000원이 전용되었으며, 2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20건에 221억 6,991만 3000원이 이체되었고,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4.2%에 해당하는 148억 821만 5,958원이 되겠음.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 2007회계연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억 8,800만원이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29억 3,658만 1,753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53.3%에 해당하는 15억 6,655만 5,697원이 되었고, 미수납액 13억 7,002만 6,05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8,8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음.

▣ 기금

○ 2007회계연도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청사 건립 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38억 1,460만 9,909원으로 2007 회계연도 수납액은 413억 7,575만 5,460원이며 지출액은 225억 2,300만 2,1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8억 5,275만 3,360원이 증가한 726억 6,736만 3,269원이나 이중 계상된 통합관리기금 226억 9,475만 8,533원을 차감하면 실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9억 7,260만 4,736원으로 기금운영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검토의견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결과 세외수입에서는 징수목표대비 재산임대수입이 152.1%, 의료사업수입이 144%, 재산매각수입이 579%, 불용품매각대가 307.5%, 변상금 214.8%, 과태료 및 범칙금 189% 지난년도 수입이 23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바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제36조등 제반 법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바, 당초 세입추계시 목표를 하향 설정 하지는 않았는지 세입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용액(집행잔액) 158억 709만 6,316원중 계획변경 취소가 1억 6,040만 50원,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억 8,744만 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 상황과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 계획이 취소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발생원인 등을 세밀히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이며, 예산절감액은 5,200만원으로 전년도의 210만원에서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며, 전용은 2006 회계연도에 22건 4억 1,228만 3천원을 전용하였으나 2007회계연도에는 32건에 4억 6,530만 3천원을 전용하였고, 이용은 11건에 4억 700만원이 이용되었으며, 이체는 265건에 1,274억 2,552만 6,000원이 이체되었는바, 이는 2차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이용이나 전용은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예외조항이므로 최소한에 그치도록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관련부서 및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 보다 유기적인 협조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